

1. 開發利益還收에 關한 法律中 改正法律

法律 第5,285號 1997. 1. 13

주요골자 및 개정이유

“경쟁력 10퍼센트 이상 높이기”의 일환으로 산업단지개발사업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을 면제함으로써 공단의 분양가인하를 유도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, 중소기업이 시행하는 공장용지조성사업, 중소기업용 공업단지조성사업 및 국민주택 건설을 위한 택지개발사업 등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의 50퍼센트를 경감함.

주요 내용

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 제1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- 1. 택지개발사업(주택단지조성사업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

제7조 제2항 각호외의 부분에 후단을, 동항에 제3호 내지 제5호를, 동조에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이 경우 각호의 규정은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.

- 3.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(이하 “중소기업”이

라 한다)이 시행하는 공장용지조성사업과 중소기업의 입주를 목적으로 시행하는 공업단지조성사업. 다만,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제외한다.

- 4.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

- 5. 산림법 제1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준보전임지의 면적이 개발사업 총면적의 100분의 70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

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산업입지

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 개발사업(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에 소재하는 산업단지인 경우를 제외한다)에 대하여는 개발부담금을 면제한다.

제15조의 2 제1항 중 “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부담금경감대상사업을”을 “제7조 제2항 및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부담금감면대상사업(다른 법률에서 감면대상으로 정한 사업을 포함한다)을”으로, “경감”을 “감면”으로 한다.

제17조 제1항 각호외의 부분 중 “건설부장관”을 “건설교통부장관”으로, “납부할 수 없다고”를 “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”로, “분할납부를”을 “5년의 범위내에서 분할납부를”으로 하고, 동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, 동조 제2항 및 제3항 중 “건설부장관”을 각각 “건설교통부장관”으로 한다.

5.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

제2조 제3호, 제14조 제1항·제2항, 제15

조 제1항, 제16조의 2 제1항·제2항, 제18조 제1항, 제19조 제1항, 제21조 제1항·제2항, 제23조 제1항·제2항, 제25조 제2항 내지 제4항 중 “건설부장관”을 각각 “건설교통부장관”으로 한다.

제10조 제3항·제5항, 제20조 및 제21조 제2항 중 “건설부령”을 각각 “건설교통부령”으로 한다.

제23조 제1항 중 “서울특별시장·직할시장”을 “특별시장·광역시장”으로 한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법은 공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 (개발부담금 감면에 대한 적용례) 제7조 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 부과종료시점부터 3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지 아니한 사업분부터 적용한다.

주택회보